

# Legal Update

2024년 6월

공고일	제목	법령	유형	관할 관청	주요 제·개정(입법예고) 내용	입법 예고 종료일	시행일	관련 부서
6/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b>(Compliance Program, 이하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li> <li>➢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제정됨. (개정 시행령과 고시는 2024. 6. 21 부터 시행)</li> </ul> <p>■ 상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 평가에서 AA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음.</li> <li>➢ A 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 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음</li> <li>➢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 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함.</li> </ul> <p>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 요건 등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 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함. (과징금 1 단계, 고발 2 단계)</p>	-	6/21	Legal

6/1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공포	공정위	<p>■ 주요내용</p> <p>①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규정 →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p> <p>②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범위반에 개입한 경우</li> <li>▲ 범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li> <li>▲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li> </ul> <p>▲ 임원이 범위반에 직접 관여</p>	-	6/21	Legal
------	-----------------------------------	-----	----	-----	--	---	------	-------